

☎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 /의무팀장 이은혜(6540)/ 팀원 박주영(6542)/E-mail:juuuuuuuuuu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04768호

시행일자 2024. 7. 2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감염병 발생·사망(검안) 신고 서식(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) 개정 안내
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-449(2024.7.19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효율적 감염병 신고를 위해 **감염병(발생·사망(검안)) 신고서 서식**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, '24년 7월 24일부터 적용됨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의3 서식

가. 주요 개정 사항: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란에 **주민(외국인)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작성 추가** 등

나. 시행일: '24.7.24.

4. 아울러, 질병관리청에서는 개정된 서식을 시행일에 맞추어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, 이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